

『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명 및 조례 근거 조항명 변경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
-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□ 본 「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
- 상위법인 「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·조문정비
(안 제1조, 제7조)
- 자문위원회 위촉 관련 사항 추가(안 제 2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
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